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501
- 제안자 : 김평남 의원 외 20명
- 제안일 : 2019년 3월 27일
- 회부일 : 2019년 3월 29일

### 2.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 산하 발주부서가 물품제조·구매 또는 공사에 적합한 특정기술(특정제품·특정공법)을 선정하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데,

이 규칙에 따르면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위원 위촉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외부위원에 대한 자격조건이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의 역할이 명확치 않는 등 특정기술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규칙이 아닌 조례로 설치하면서, 현행 불합리와 미비사항들을 개선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특정기술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를 정의함(안 제2조).

다. 심사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

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

라. 시장으로 하여금 발주부서가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부과함(안 제4조).

마. 발주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1)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특정기술 10억원 초과 시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2)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수를 과반으로 구성

3) 위원장과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자격기준 규정

바. 위원회 기능을 규정함(안 제6조).

1)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 최종 선정

2) 위원회의 의결로 현장실사 가능

3)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사.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선정심사 의뢰토록 함(안 제7조).
- 아. 위원회는 기술심사와 현장실사 과정에서 해당 공법의 개발자나 보유자 그리고 해당 공사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차.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토록 하고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를 규정함(안 제11조).
- 타. 참석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근거를 둠(안 제12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19.4.3.~2019.4.10.) 결과 : 해당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검토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행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임.
  - ※ “특정제품”이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발주시 물품 등에 대한 제조업체명, 제품모델명, 특정규격(사양) 및 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조건 제시 포함)함으로써 다른 제품(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경우의 제품과 공법을 의미함.
-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는 외부위원 위촉 가능)하고, 외부위원의 위촉 규정과 자격요건, 심사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여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구성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변경 전(규칙)	변경 후(조례안)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명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사항	- 5~7명, 내부위원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 5~7명, 내부/외부위원 구성 -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 필요시 현장실사 - 회의록, 의결서 등 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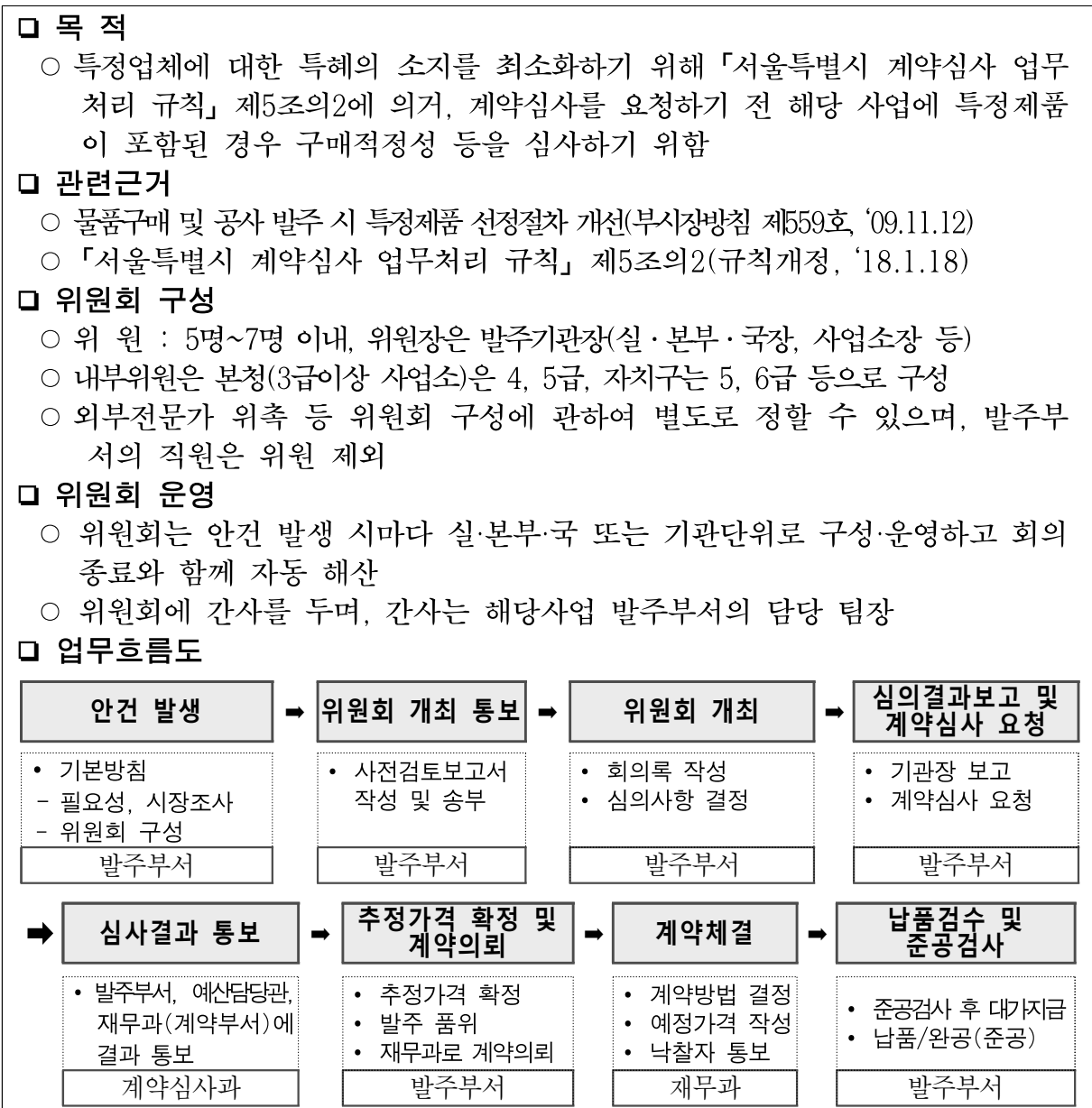
- 특정제품 선정심사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사용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특정 기술(공법)이나 제품이 포함된 경우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방침(물품구매 및 공사 발주 시 특정제품 선정절차 개선)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현행 규칙에 담아 운영해 오고 있음.

※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계약심사와 관련한 사안을 조례로 규정한 곳은 없으며, 특정기술(제품)선정 위원회 운영(규칙)은 서울시가 유일함.

○ 현행 심사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발주부서인 실·본부·국 또는 기관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고 있으며, 5명부터 7명 이내에 실국본부장을 위원장으로 4, 5급(자치구는 5, 6급) 등의 내부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40건에 계약심사 요청누계금액은 3,982억원에 달하고 있음(참고자료 내역 참조).

※ 총 240건 3982억원 : 특정기술 136건 3,424억원, 특정제품 104건 558억원

〈 현행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개요 〉



〈2018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운영건수	계약심사 요청금액
본 청	21	220
상수도사업본부	12	62
도시기반시설본부	8	1,240
소방재난본부	16	87
한강사업본부	2	277
사업소	50	382
자치구	82	829
투자/출연기관	49	885
<b>합 계</b>	<b>240</b>	<b>3,982</b>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합의제행정 기관과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특정 기술심사위원회’로 보완하여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특정제품심사와 관련한 계약심사의 운영 규모(연 240건, 약4천억원)가 상당한 반면, 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칙적으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위원의 자격이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비치,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에 대한 규정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대법원 2009 추53 판결)에 비추어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하겠음.

###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 관련 규정>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9조(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청되는 경우 2. 중립적이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한 경우 3. 주민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대법원 2009.9.24. 선고 2009추53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그 설치의 근거가 마련된 합의제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할하여 관리·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일부 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집행기관에 속하는 것이지 지방의회에 속한다거나 집행기관이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된 제3의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진다고 해석되는 점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그대로 의결, 재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제1절에 따라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를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는 그 밖의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안전부 예규(제4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3장 제1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를 ‘계약심사’라고 정의하면서, 제6절 보칙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1조(예정가격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이행기간·수급상황·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예정가격의 작성시기, 결정방법,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실례가격(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 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② 삭제 <2014. 2. 5.>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정가격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80페이지)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이다.

제6절 보칙 (93페이지)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 <법률자문 결과 2019.4.15.>

#### - 법률자문 요지

「지방계약법」 등 지방자치단체 계약과 관련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함.

※ 법률자문 회신: 설치가능1, 설치불가능2

#### - 자문회신1: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 행정기관)의 규정을 원용하여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임.

#### - 자문회신2: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음.

#### - 자문회신3: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구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함. 그러므로 이를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만 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됨.

## 나. 세부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의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 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정의)	- 발주부서 - 특정기술 - 재료원가 - 순공사원가
제3조(심사대상 및 범위)	- 심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 5천만원 초과</li> <li>▶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 1억원 초과</li> <li>▶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 2천만원 초과</li> <li>▶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원 초과</li> </ul> - 심사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li> <li>▶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li> </ul>
제4조(시장의 책무)	-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며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계약심사 요청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심사 - 위원장 포함 5명 이상(10억 초과 시 7명 이상)으로 구성 - 외부위원 수 과반
제6조(위원회 기능)	- 특정기술의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심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 최종 선정
제7조(선정심사의 의뢰)	-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 위원회에 의뢰 -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 반드시 1개 이상 포함
제8조(협조요청 등)	-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제척·기피·회피 규정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회의 내용 기록 - 현장실사의 경우 회의록 생략 가능
제11조(비밀준수)	-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제12조(수당 등)	-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제1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 1) 제명, 목적, 정의, 심사 대상 및 범위(안 제명, 제1조, 제2조, 3조)

- 현행 규칙에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제품”을 “특정기술”로 하여(안 제명), 발주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안 제2조) 있음.

### ※ 안 제2조제2호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

- 안 제명 및 정의 등 본 조례안에서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 용어를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특정기술(공법) 심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특정기술 136건 3,424억원, 특정제품 104건 558억원)을 감안하여 “특정기술” 용어로 통일하였다고 보여 지나, 기존에 있는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와 용어 사용에 혼동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 제명 및 각 조항에서 “특정 기술 제품”으로 하는 방안, 또는 현행 규칙에 있는 “특정제품”과 조례상 “특정기술”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성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재무국에서 특정기술심사는 「지방계약법」 제11조에 따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령의 체계에 따라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위원회의 운영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규정을 현행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의 내용을 보완·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발주부서에 서울시 본청의 과 및 담당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정의를 종전 규칙과 같이 정의(제1호)하고 있고, 특정기술(제2호)·재료원가(제3호의)·순공사원가(제4호)의 정의를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에서 다루지 않는 추정가격, 추정금액, 특정제품에 관한 정의는 담지 않았음.

○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심사 대상 범위를 특정기술(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원 초과, 동일 특정공법의 공정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원 초과)과 물품제조·구매(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의 금액에 따른 분류기준을 종전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다른 조례로 이미 선정한 신기술이나 이미 특정기술들 간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음.

## 2)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안 제5조부터 제13조)

○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규칙과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 비교는 다음과 같음.

< 주요 변경 사항 >

구 분	현행 규칙	조례안
명칭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근거법령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법령
위원회 명 (안 제5조1항)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위원수 및 구성 (안 제5조제2항)	- 5~7명, 내부위원으로 구성 - 필요시 외부전문가 위촉	- 5~7명, 내부/외부위원 구성 -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
위원장 역할 (안 제5조제3항·제6항)	-	- 회의 총괄하되 평가·의결에는 참여하지 않음. - 필요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함.
위원회 심사 항목 (안제6조제1항)	- 특정제품 구매 타당성 및 가격 적정성 - 특정제품 선정 적정 여부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특정	- 특정기술 필요여부 -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 -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 -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 분	현행 규칙	조례안
심사 실효성 제고 (안 6조제2항)	-	- 현장실사 -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함.
협조요청 등 (안제8조)	-	- 특정기술 관계자 및 관련 공무원 출석 요청, 자료제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 제9조)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회의록 등의 비치 (안 제10조)	-	- 발주부서 장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비치 의무 규정

○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특정기술 선정심사 시기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같은 사안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본 조항에서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규칙임.

< 계약심사 운영 관련 준용 규정 비교 >

본 제정안	수정의견
서울특별시규칙 준용	준용 규정 삭제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 (삭제) ----- ----- ----- -----.

- 안 제5조제2항제2호는 내부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내부위원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일부 자구(수준-준용)를 명확하게 하여 종전과 같이 정하였으며,
-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자격을 신설하였음.
- 안 제5조제3항 및 제6항은 위원장의 역할로 회의를 총괄하되 안전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실·본부·국장 등 기관장인 위원장은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안 제6조는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심사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의결로 현장 실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안 제8조는 특정기술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정기술에 대한 위원회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안 제9조는 발주부서 장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비치 및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조례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사항을 직접 추가하거나,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기타 조례안의 내용 중 비밀준수(안 제11조), 수당(안 제12조) 및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조례의 완결성 및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겠음.
-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설치 시 고려사항 중 필수규정 명시 여부(14쪽)

1.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존속 기한(5년 이내 범위로 명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①항 및 ②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또한, 재무국에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자문사항으로 ‘원가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어,
  -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과 기능면에서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는바, 두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 행정2부시장 직속 기술심사담당관에서도 건설공사의 설계와 관련한 신기술 적용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 자체공법선정심사위원회”를 부시장 방침으로 운영하고 있음.

**< 계약심사 운영 관련 근거 규정 비교 >**

원가분석자문회의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안)
<p>「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본 제정안: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p>
<p>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li> <li>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li> <li>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li> <li>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기술 필요여부</li> <li>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li> <li>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li> <li>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li> <li>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b>「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b></p>			
<p>제2조(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당해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p>			
<p>제12조의2(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li> <li>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li> <li>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li> <li>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li> </ol>			
<p>② 자문회의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p>			
<p>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p>			
<p>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전문위원</p>	<p>김태한</p>	<p>입법조사관</p>	<p>최석훈</p>



[참고 1] 2018년 특정기술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내역

(단위:원)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총 액	398,222,739,022			
1	안전총괄본부	탄천1교 보수공사	838,020,000	○		토목
2	안전총괄본부	동호대교 보수공사(2018년)	1,026,300,000	○		토목
3	안전총괄본부	우이3교 성능개선공사	3,379,224,000	○		토목
4	안전총괄본부	도림천고가 보수공사	1,122,900,000	○		건축
5	안전총괄본부	워커힐고가 보수공사	1,200,375,000	○		토목
6	안전총괄본부	응봉교 교량점검시설 등 설치공사	808,200,000	○		토목
7	기후환경본부	상암수소충전소 열교환기 제조구매 설치	63,984,240		○	구매
8	물순환안전국	(탄천)소화가스 전용발전기 예방정비	250,000,000		○	토목
9	물순환안전국	(서남)소화가스 전용발전기 예방정비	349,800,000		○	토목
10	물순환안전국	1처리장 초침 지하구조물 보수공사	1,500,000,000	○		토목
11	물순환안전국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600,000,000	○		토목
12	물순환안전국	제2처리장 최초침전지 내부 보수공사	800,000,000	○		토목
13	물순환안전국	도림천 차집관거 보수공사	975,000,000	○		토목
14	시민건강국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매	119,176,000		○	토목
15	안전총괄본부	한강상 PSC교량 전강화공사(원효대교)	1,688,742,000	○		구매
16	안전총괄본부	성수대교 보수공사	3,125,540,000	○		구매
17	안전총괄본부	2018년 보라매고가 보수공사	1,408,445,000	○		구매
18	안전총괄본부	영등포역고가 내진보강공사(장기계속)	1,790,558,000	○		토목
19	복지기획관	서울노인복지센터 내진성능 보강공사	689,425,000	○		토목
20	일자리노동정책관	서울시 일자리카페 키오스크 구매설치	67,737,000		○	건축 (조경)
21	행정국	서울시 서천연수원 오수처리시설(분리막) 구매 설치	230,139,000		○	구매
22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4계열 응집 침전지 벽체 및 트라프 보수공사	978,230,000	○		토목
23	광암아리수정수센터	온라인 조류연속측정기 1대 구매 설치	66,500,000		○	토목
24	서울물연구원	2018년 제2차 정수센터 전문물품 공동구매	172,251,200		○	토목
25	서울물연구원	2018년 수질시험재료 연간단가계약구매	857,411,630		○	토목
26	서울물연구원	2018년 상반기 수질시험재료 공동구매	194,964,440		○	토목
27	서울물연구원	2018년 제1차 정수센터 전문물품 공동구매	120,488,500		○	토목
28	수도자재센터	수도계량기 봉인 구매	126,123,470		○	토목
29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정수장여과지 하부집수장치개선공사	1,308,648,000	○		토목
30	암사아리수정수센터	1정수장 응집 침전지 보수공사	799,868,000	○		토목
31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스트레이너블록외 2종구매	690,080,000		○	토목
32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풍납취수장 조류(반달말) 생물감시장치 구매 설치	68,000,000		○	구매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33	중부수도사업소	중부수도사업소 청사 내진보강공사	1,136,014,000	○		구매
34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리모델링 공사 (건축)	19,895,655,000	○		토목
35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건축)	20,298,970,000	○		토목
36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 궤도공사에 따른 레일 구매	1,120,614,264		○	토목
37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 궤도공사에 따른 RC 침목 구매	1,548,245,600		○	토목
38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 궤도공사에 따른 분기기 구매	924,550,000		○	토목
39	도시기반시설본부	탄천물재생센터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혼화조교반기 구매	163,350,000		○	토목
40	도시기반시설본부	월드컵 남단 연결로 및 접속교	55,018,150,000	○		구매
41	도시기반시설본부	월드컵대교~서부간선도로간 직결램프 설치	25,011,230,000	○		구매
42	강남소방서	강남소방서 119안전센터 3개소 내진성능 보강공사	786,709,000	○		구매
43	노원소방서	노원소방서 청사 내진보강공사	514,827,000	○		토목
44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용 관창 구매	46,541,000		○	토목
45	소방재난본부	공기호흡기 면체 구매	60,000,000		○	토목
46	소방재난본부	공기호흡기면체 등 3종 구매	854,200,220		○	토목
47	소방재난본부	소방대원 안전헬멧(174개) 구매	44,892,000		○	건축
48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대원 특수안전장갑구매	687,500,000		○	구매
49	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장비(시편연마기 세트)	33,897,600		○	건축
50	소방재난본부	동력절단기등 23종 1157점 구매	1,463,110,000		○	건축
51	소방재난본부	로프발사총 등 2종 8점 구매	39,688,000		○	구매
52	소방재난본부	잠수장비세트 등 67종 3,325점 구매	1,402,305,300		○	구매
53	소방재난본부	화재진압장비 68종 구매	1,389,391,600		○	구매
54	소방재난본부	소방대원 직무별 일반안전장갑구매	320,214,200		○	구매
55	소방재난본부	공기호흡기 신형 등지계 구매	735,000,000		○	토목
56	소방재난본부	소방운전대원 안전화 구매	254,898,000		○	토목
57	소방재난본부	지면압력측정장비 구매	30,250,000		○	토목
58	한강사업본부	한강매점 부력체 설치 및 보수공사계획 (토목)	1,123,118,000	○		토목
59	한강사업본부	한강통합선착장 조성(토목)	26,507,124,000	○		토목
60	강서도로사업소	2018년 관내포장도로 불량배출정비공사 (연간단가)	618,000,000	○		토목
61	강서도로사업소	행주1교 내진성능개선공사	528,987,000	○		토목
62	강서도로사업소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전력설비 중 양관제장치 구매	28,160,000		○	토목
63	강서도로사업소	기계설비 중앙관제장치(CCMS) 구매	29,535,000		○	토목
64	강서도로사업소	서부트럭터미널앞 지하차도 풍향풍속계 및 교통량계 구매	111,210,000		○	구매
65	난지물재생센터	2018년 난지수계 차집관로 준설공사	680,000,000	○		건축( 조경)
66	난지물재생센터	2018년 분뇨처리장 A지 보수공사	1,188,770,000	○		토목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67	난지물재생센터	제1처리장 최초침전지 보수공사	1,161,100,000	○		토목
68	난지물재생센터	2018년 소화조 보수공사	599,500,000	○		토목
69	난지물재생센터	2018년 흥제천 차집관거 보수공사(사각)	1,400,000,000	○		토목
70	난지물재생센터	2018년 불광천 차집관거 보수공사(사각)	700,000,000	○		토목
71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제작구매설치	288,051,000		○	토목
72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계면측정기 제작구매 설치	121,710,000		○	구매
73	난지물재생센터	바이오 탈취기 영양염류 구매	106,920,000		○	구매
74	남부도로사업소	시흥천 1복개외 2개소 보수공사	534,015,000	○		토목
75	남부도로사업소	대방천복개 보수공사	530,000,000	○		토목
76	남부도로사업소	봉림교 내진성능개선공사	717,740,000	○		토목
77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공사	952,022,000		○	토목
78	동부도로사업소	청계산 지하차도외 3개소 보수공사	587,400,000	○		구매
79	동부도로사업소	2018년 관내포장도로 불량배출정비공사 (연간단가)	887,000,000	○		구매
80	동부도로사업소	삼성교 보수공사	1,818,359,000	○		구매
81	보건환경연구원	2018년도 대기오염물질검사 시험재료 3 차 집중구매 (Isolator Colum 등 89종 구매)	69,042,380		○	토목
82	보건환경연구원	Phosphoric acid 등 196종	74,958,400		○	토목
83	북부도로사업소	청계천복개(좌안)보수공사	1,645,890,000	○		토목
84	북부도로사업소	월곡교 성능개선 공사	1,605,243,000	○		구매
85	북부도로사업소	당현천1복개구조물외 1개소 보수공사	1,114,130,000	○		토목
86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주차장 결재시스템 IC카드단말기 교체	62,260,000		○	토목
8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하늘공원 풍력발전기 교체 설치	69,740,000		○	구매
88	서부도로사업소	증산교 성능개선공사	852,419,000	○		구매
89	서부수도사업소	와우산1지 홍은배수지3지 내부방수방식 공사	682,748,000	○		토목
90	서울대공원	서울대공원 하수관로 정비공사(4차)	695,123,000	○		토목
91	서울시농업기술센터	2018년 FTA대응 벼 생력재배기술보급 농업용드론 구입	137,335,000		○	토목
92	서울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자동제어시스템 교체 및 업그 레이드 구매 설치	46,900,000		○	토목
93	서울시의회	10대 의원용 노트북 렌탈(24개월)	179,467,000		○	토목
94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은평수장고 공사	1,467,300,000		○	토목
95	서울역사박물관	휴대용엑스선형광분석기(XRF) 구매	39,800,000		○	토목
96	중랑물재생센터	청계천 좌안 차집관로 물막이 공사	776,600,000	○		토목
97	중랑물재생센터	우이천외 3개 하천차집관로 정비공사	871,200,000	○		토목
98	중랑물재생센터	청계천차집관로 물막이공사	864,000,000	○		토목
99	중랑물재생센터	청계천좌안 차집관로 성능개선공사	3,500,000,000	○		토목
100	중랑물재생센터	제3처리장 침전지(D열) 보수공사	4,461,600,000	○		구매
101	중랑물재생센터	물유동측 열교환기 제작구매설치	453,200,000		○	구매
102	중랑물재생센터	제3,4처리장 중침 계면측정기 제조구매 설치	429,360,000		○	구매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103	중량물재생센터	중량물재생센터 분뇨처리동 악취방지시설 (탈취기) 제작설치	550,000,000		○	구매
104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 주차요금 정산기 구매	41,580,000		○	구매
10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올림픽주경기장 2층 및 보조경기장 관람 석 교체 및 바닥정비공사	2,400,000,000	○		구매
106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효창운동장 관람석 개선 및 바닥정비공사	1,784,000,000	○		구매
10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올림픽주경기장 2층 및 보조경기장 관람 석 교체 및 바닥정비공사	620,293,000	○		구매
108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2수영장 부속 보조다이빙장 공기압축기 (호흡용) 구매	59,400,000		○	구매
109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빙상장 정빙기 배터리 구매설치	27,500,000		○	구매
110	강남구청	대치동 506~316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 사	964,489,000	○		구매
111	강남구청	논현동 189-21~170-28간 사각형거 보 수보강공사	1,647,600,000	○		토목
112	강남구청	청담동 122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70,035,000	○		구매
113	강동구청	성내배수분구하수관거종합정비사업 비굴착전체보수공사(3블럭)	567,160,000	○		구매
114	강동구청	성내천 제5고지배수로 보수공사	650,280,000	○		구매
115	강동구청	하수관로 조사장비 CCTV	43,700,000		○	구매
116	강북구청	도봉로65길 주변 노후사각형거 보수공 사(총차)	641,564,000	○		구매
117	강북구청	솔매로93주변외2개소 노후사각형거보수공사(총차)	571,604,000	○		구매
118	강북구청	도봉로6길 주변 노후사각형거 보수공사	682,220,000	○		구매
119	강서구청	개화동 202-1번지 개화수문 배수암거 보 수보강공사	642,290,000	○		구매
120	관악구청	관악산 신림6배수지 녹지연결로 조성공사	1,182,900,000	○		구매
121	관악구청	신림4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883,650,000	○		구매
122	관악구청	관악산모험숲조성사업관련숲체험시설제작 구매설치	950,283,000		○	구매
123	광진구청	아차산로 건대병원앞 하수암거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	792,830,000	○		토목
124	광진구청	구의동 253-1~252-90 하수암거 보수 보강공사	680,960,000	○		토목
125	구로구청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 보강공사	663,900,000	○		구매
126	구로구청	가마산로 286~구로중앙로18길 68외 2개 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1,218,942,000	○		구매
127	금천구청	하수관로 조사장비 CCTV	43,700,000		○	구매
128	노원구청	상계로17길 125 일대 원형관로 보수공 사(비굴착)	646,800,000	○		구매
129	동대문구청	답십리 241주변 외1개소 사각형거 보수 보강공사	1,358,665,000	○		구매
130	동대문구청	전농동 582번지 주변외 1개소 사각형거	683,210,000	○		구매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보수공사				
131	동대문구청	장안동 414 주변 외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776,446,000	○		구매
132	동대문구청	장안동 146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50,760,000	○		건축
133	동대문구청	장안동 102번지 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591,580,000	○		구매
134	동대문구청	장안동 465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921,888,000	○		구매
135	동대문구청	전농동 466-9주변 외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588,290,000	○		구매
136	동대문구청	하수관로 조사장비 CCTV	43,700,000		○	구매
137	동작구청	대방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5,6구간	705,980,000	○		구매
138	동작구청	대방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1구간)	658,020,000	○		구매
139	동작구청	대방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2구간)	545,710,000	○		구매
140	서대문구청	마음건강 스마트 헬스케어 구매	54,000,000		○	구매
141	서대문구청	신촌동 도시재생사업구간내 하수암거 정비공사	474,234,000	○		구매
142	서대문구청	연희맛로 주변 사각형거 보수 보강공사	1,487,328,000	○		구매
143	서초구청	서초대로54~64길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92,421,000	○		구매
144	서초구청	동광로19길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971,191,000	○		구매
145	서초구청	고속터미널 사거리주변 하수암거 보수공사	1,914,000,000	○		토목
146	서초구청	반포대로28길 주변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공사	1,112,551,000	○		토목
147	서초구청	사임당로38~서초대로49길7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828,000,000	○		토목
148	서초구청	사평대로253~205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727,870,000	○		토목
149	서초구청	서일초등학교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980,517,000	○		토목
150	서초구청	신반포로33길 64주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763,928,000	○		토목
151	서초구청	하수도시설물 약취저감사업 1단계 구매·제작·설치	393,140,000		○	토목
152	성동구청	금호로 확장 공사	5,498,900,000	○		토목
153	성동구청	행당마을마당 주변 사각형거 정비공사	573,430,000	○		구매
154	성동구청	광나루로 210 주변 사각형거 정비공사	641,850,000	○		토목
155	성북구청	오패산로3길 ~ 성북트리즘빌딩 사각형거 보수 보강공사	1,192,536,000	○		토목
156	성북구청	도봉로3~종암로214-1등 2개소 하수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00,000,000	○		토목
157	성북구청	성북로31길5~성북로132-1외2개소 사각형거보수보강공사	891,550,000	○		토목
158	성북구청	정릉동 266-134~266-93 외 4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	741,873,000	○		토목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159	성북구청	성북로 26길~성북로 135외 2개소 하수 암거 보수보강공사	1,068,254,000	○		토목
160	성북구청	오패산로46 ~ 화랑로 76간 사각형거 보 수보강공사	626,230,000	○		토목
161	성북구청	오패산로3길 164 ~ 성북트리즈빌딩 교 차로(2련)구간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572,330,000	○		토목
162	송파구청	서울아산병원~천호역간 외 1개소 사각형 거 보수보강공사	1,044,100,000	○		토목
163	송파구청	오금역~올림픽공원역간 외 1개소 사각형 거 보수보강공사	843,300,000	○		토목
164	송파구청	방이시장일대외 1개소 사각형거보수보강 공사	519,200,000	○		구매
165	양천구청	화곡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2018년)	3,349,023,000	○		구매
166	양천구청	오목로46길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644,578,000	○		구매
167	양천구청	중앙로 29길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보 강 공사	639,980,000	○		구매
168	양천구청	신월2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 (2018년분)	3,367,946,000	○		구매
169	양천구청	신월3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2018년분)	2,719,873,000	○		구매
170	양천소방서	양천소방서 지진체험장치 제조설	100,000,000		○	구매
171	영등포구청	여의도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1,495,875,000	○		구매
172	영등포구청	양평1동 16-1~19번지 사각형거 보수보 강공사	792,440,000	○		구매
173	영등포구청	양평1동 16-1~19번지 사각형거 보수보 강공사	967,820,000	○		구매
174	용산구청	독서당로 103 ~대사관로34길 40구간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874,588,000	○		구매
175	용산구청	한남외국인아파트 입구~한남대로21길 33 구간 사각형거 보수보강 공사	594,704,000	○		구매
176	용산구청	효창원로150 ~ 효창원로62길 16 일대 하수사각형거 개량 공사	1,192,300,000	○		구매
177	용산구청	용산구 키오스크 구매 설치	27,094,000		○	구매
178	은평구청	녹번동 152-67일대 노후하수관로 정비 공사	693,838,000	○		구매
179	은평구청	응암동126-40~120-3 주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985,873,000	○		구매
180	은평구청	갈현동416-7~404-2외 5개소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1,664,166,000	○		토목
181	은평구청	하수관로 조사장비 CCTV	43,700,000		○	토목
182	종로구청	종로구 사각형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1 권역)	3,624,170,000	○		토목
183	종로구청	종로구 사각형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2 권역)	2,660,700,000	○		구매
184	종로구청	종로구 사각형 하수관로 보수보강공사(3 권역)	2,946,130,000	○		토목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185	종로구청	실시간 전기화재 감시시스템 장치 구매	33,000,000		○	토목
186	종로구청	하수관로 조사장비 CCTV	43,700,000		○	토목
187	중구청	황학동 756~2469-2번지 사각형거 보수보강	522,170,000	○		토목
188	중구청	남학동18-1~13-1 일대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405,103,000	○		토목
189	중구청	공용재단실 구축 관련 장비 구매	234,500,000		○	토목
190	중랑구청	2018년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중랑)	1,786,400,000	○		구매
191	중랑구청	망우동 우림시장주변외 사각형거 보수보강공사	2,612,300,000	○		토목
192	서울디자인재단	백업장비 및 라이선스 구매	97,636,000		○	토목
193	서울산업진흥원	2018년 창업기업 제품화 지원센터 장비구매	1,401,800,000		○	토목
194	서울산업진흥원	미디어콘텐츠센터방송장비 구매	1,885,956,000		○	토목
195	서울산업진흥원	색보정장비 업그레이드 구매	396,629,000		○	토목
196	농수산물유통공사	안전성검사용 소모품 구매	611,023,380		○	구매
197	서울교통공사	지하철1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15공구)	7,592,334,000	○		토목
198	서울교통공사	지하철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21공구)	3,431,265,000	○		토목
199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3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19공구)	5,797,757,000	○		토목
200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24공구)	4,667,412,000	○		구매
201	서울교통공사	지하철4호선지하구조물내진보강공사(제20공구)	8,443,086,000	○		토목
202	서울교통공사	지하철1~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22공구)	4,358,968,000	○		토목
203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4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제14공구)	8,555,000,000	○		토목
204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2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제16공구)	4,087,301,000	○		구매
205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3호선 지하구조물 내진보강공사(22공구)	4,358,968,000	○		토목
206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축전지 구매설치	36,410,000		○	토목
207	서울교통공사	4호선 교, 직류 전동차 교, 직 절환기(ADS) 성능개선	124,466,000		○	토목
208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축전지 구매설치	77,220,000		○	구매
209	서울교통공사	공기질 자동측정장비용 물품 샘플필터 등 2종 구매	46,675,200		○	건축
210	서울교통공사	바이트팁 등 3종 구매	42,004,710		○	구매
211	서울교통공사	카메라 등 6종 구매	97,010,000		○	토목
212	서울교통공사	보조트럭(보조바퀴) 구매	65,835,000		○	토목
213	서울교통공사	ATO STEKOP PCB 등 54종 구매	692,930,000		○	토목
214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축전지(녹색제품) 구매 설치	74,580,000		○	구매

연번	기관명 (실국명)	심사요청 건명	계약심사 요청금액	심사대상		비고
				특정 기술	물품 제조 구매	
215	서울교통공사	피뢰기 등 2종 구매	55,000,000		○	구매
216	서울교통공사	변전소 축전지(녹색제품) 구매 설치	105,122,270		○	구매
217	서울시설공단	원효대교북단교 내진보강 및 성능개선공사	2,250,195,000	○		구매
218	서울시설공단	내국IC 외 1개소 보수공사	923,129,000	○		토목
219	서울시설공단	공영주차장주차관제시스템 IC카드단말기구매	397,260,000		○	토목
220	서울에너지공사	열량계 구매	473,451,000		○	구매
221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냉각탑 FAN ASSY 구매	51,975,000		○	토목
222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폐수처리실 가성소다 약품펌프 구매(설치포함)	24,750,000		○	토목
223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발전보일러 수질관리제어시스템 및 경수연화장치 제작구매 설치	360,627,000		○	토목
224	서울에너지공사	일방향전송장비용 DCS PHD 서버 구매	149,712,000		○	토목
225	서울의료원	진료진용 공기구비품(태블릿PC) 구매	98,800,000		○	토목
226	서울의료원	2018년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산하의료기관 위생재료 통합구매	11,694,888,094		○	토목
227	서울의료원	2019년 서울의료원 및 서울시산하의료기관 검사재료 통합구매	10,964,286,000		○	토목
228	서울의료원	엔브렐주사25mg외 10종 의약품 구매	311,236,428		○	구매
229	서울의료원	서울의료원 임대장비 검사재료 단가계약 (HBsAg RGT 등 227품목, 11개 그룹)	1,329,868,896		○	구매
230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통합시스템 인프라 구매	305,596,000		○	구매
231	서울주택도시공사	백업용량 및 라이선스 증설	216,553,000		○	구매
232	서울주택도시공사	항동지구 3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조경) 자전거보관대 구매	143,100,000		○	건축
233	농수산식품공사	데이터백업시스템 증설	54,340,000		○	건축
234	농수산식품공사	출력물보안시스템도입	132,440,000		○	건축
235	농수산식품공사	CCTV 영상 스토리지 증설	94,875,000		○	건축
236	세종문화회관	무대노후시설 무대조명 구매	907,514,000		○	구매
237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노후 메인스피커 앰프 구매	272,996,000		○	구매
238	세종문화회관	삼청각 일화당 무대조명 구매 설치	97,843,000		○	토목
239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조경) 쓰레기통 구매	48,642,000		○	토목
240	서울주택도시공사	마곡중앙공원 조성공사(조경) 태양광벤치 구매	30,400,000		○	구매



**[참고 2] 현행 위원회 vs 조례안 위원회 규정 변경 내용 비교**

현 행	제 정 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p> <p>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p> <p>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p> <p>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p> <p>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p> <p>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p> <p>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p> <p>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p> <p>4.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p> <p>1. “발주부서“란 공사 또는 물품제조·구매의 발주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p> <p>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p> <p>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p> <p>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p> <p>라. 「지방자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 구역 안의 자치구(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p> <p>마.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p> <p>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p>

현행	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b></p> <p>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p> <p>5.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p> <p>6. “특정제품“이란 물품제조·구매 및 공사 발주 시 제조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기술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제품·공법 및 해당 공법에 대한 시공·기술(특허제품·특허공법 등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 신기술은 제외한다.</p> <p>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  ③ 심사대상 특정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제품이 포함되면 같은 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특정제품이 심사대상이 된다.</p> <p>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p> <p>2. “특정기술“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공법·신기술·특허 등을 계약문서에 표기할 경우 다른 제품이나 공법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는 특정제품·특정공법 등을 말한다.</p> <p>3. “재료원가“란 동일 특정제품의 구성 물품 가격의 합계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p> <p>4. “순공사원가“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설계내역서)에 따른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금액(제경비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말한다.</p> <p>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 ① 심사대상 특정기술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사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현행	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b></p> <p>가. 품명(제품의 특정 이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재료원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공사 성격(내구성, 친환경, 불연성 등)이나 특수한 기술 등으로 공종별 순공사원가(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을 말한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포함한 공사. 이 경우 해당 공종을 모두 심의대상에 포함한다.</p> <p>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품명당 구매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나. 특정제품 구매금액의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p> <p>3. 물품제조 사업에 포함된 특정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특정제품 제조금액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심의대상은 해당 특정제품에 한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p> <p>가. 동일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 초과  나. 동일 특정공법의 공종별 순공사원가 합계가 1억 원 초과</p> <p>2. 물품제조·구매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일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초과  나. 모든 특정제품의 제조·구매금액 합계가 1억 원 초과</p> <p>②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한 신기술  2. 관련 특정기술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한 특정기술</p> <p>③ 그밖에 심사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p> <p>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산하 발주부서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특정기술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5조(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발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 해당 사업에 포함된 특정기술에 대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특정기술 선정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5명 이상(제3조제1항의 제1호와 제2호</p>

현행	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b></p> <p>성하되,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위촉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p> <p>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p> <p>2. 위원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 5급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 6급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수준  라. 출연기관: 자치구 수준</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p> <p>각 목 중 어느 하나의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한다.</p> <p>1. 위원장  가. 시 본청 및 자치구: 실·본부·국장  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다만, 서울시립대학교는 행정처장, 상수도사업본부는 부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국장, 한강사업본부는 총무부장)  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라.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기관장 또는 본부장급 이상</p> <p>2. 내부위원: 해당 사업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발주부서 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시 본청 및 사업소(3급 이상): 4·5급 공무원  나. 시 사업소(4급 이하) 및 자치구: 5·6급 공무원  다. 공사·공단: 시 본청 상당 준용  라. 출연기관: 자치구 상당 준용</p> <p>3. 외부위원: 특정기술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나. 해당분야 법인·단체 등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를 포함한다) 이상의 전문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  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p>

현행	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b></p> <p>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p> <p>⑤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p> <p>제5조의2(특정제품 선정심사)</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제품 구매 타당성 및 가격 적정성</li> <li>2. 특정제품 선정 적정 여부</li> <li>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b></p> <p>조례」 제7조에 따른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사.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p> <p>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안전 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p> <p>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사업 발주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p> <p>⑤ 위원회는 안전 발생 시마다 실·본부·국 또는 기관단위로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p> <p>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p>제6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정기술 필요여부</li> <li>2. 특정기술 성능 및 품질 우수성</li> <li>3. 특정기술 가격 적정성</li> <li>4. 특정기술 현장적용성 및 유지관리성</li> <li>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lt;신설&gt;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선정심사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lt;신설&gt; ③ 그 밖에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p> <p>&lt;신설&gt; 제7조(선정심사 의뢰) 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기술들을 조사하여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최소 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인 경우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한다)을 마련하고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기술의 최종 선정을 규칙이 정하는 신청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의뢰한다.</p> <p>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공사 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특정기술 후보군을 마련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p>

현행	제정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p>제10조에 따라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 중 건설신기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1개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p> <p>&lt;신설&gt; 제8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제6조의 원활한 심사와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기술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lt;신설&gt;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에서 제척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li> <li>2. 위원이 해당 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li> <li>3. 위원이 해당 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li> <li>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li> </ol> <p>② 해당 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p> <p>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건의 심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p> <p>&lt;신설&gt;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속기 또는 녹음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 다만, 현장실사의 경우는 회의록을 생략할 수 있다.</p>

현행	제정안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p>&lt;신설&gt;</p> <p>&lt;신설&gt;</p> <p>&lt;신설&gt;</p>	<p>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